14.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1999-182호 1999. 5, 26.

개 정 이 유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광역도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화·광역화등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여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고자 함.

주 요 골 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두되 행위제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도록 위임함.

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일정한 기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

축물의 건축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부지중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이 없을 경우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시장 ·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매수청구후 3년이내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영구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할 수 있게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라. 도시의 광역화 진전에 따른 광역적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91년 도입된 광역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개 이상 연접한 도시에 대해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여 도시간 기능분담 · 환경보전 · 광역시설의 설치등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수립권자를 시장 · 군수에서 시 · 도지사로 현실화되며, 시 · 도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

마.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소규모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중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도」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로 개편하여, 명확한 허가대상 · 기준 · 절차를 규정하여 투명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등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 · 도지사에게 도시계획결정권한등 도시계획권한을 이양하고,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등 광역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권을 부여하며, 시 · 도 조례로 지역설정에 맞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유사한 제도로 운영중인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하여 도시계획체계속에 편입하고 발전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유사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아.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 지구안의 행위제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적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주민이 쉽게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